##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150 발의연월일: 2021. 11. 5.

발 의 자:서일준·강민국·홍문표

안병길 · 최형두 · 윤한홍

김희곤 · 정동만 · 한무경

하영제 • 권명호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·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,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,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에

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중 "10킬로미터"를 "20킬로미터"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주변지역개발예정지역의 지원 등) ① 국가는 「도로법」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·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·체육·관광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주변지역개발사업) ① 국	제12조(주변지역개발사업) ①
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	
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	
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	
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	<u>2</u> 0킬로미터
<u>미터</u> 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	
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	
할 수 있다.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의2(주변지역개발예정지역
	의 지원 등) ① 국가는 「도로
	법」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
	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
	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건설 및
	유지·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
	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	②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
	내의 문화・체육・관광시설로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	의 설치 및 유지・관리 비용의
	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
	있다.